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시청각기록물 생산 의무대상을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까지 구체화 하여 시청각기록물 생산에 공백이 없도록 함
- 전자기록물 보존 관련 조항을 전자기록물 생산 환경에 부합하는 절차로 구체화하기 위함
- 「법원기록물관리규칙」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로 확대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관련학과 전공자들의 공직 진입 문호를 확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9조, 제11조)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이 삭제되고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규칙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1

조제3호를 변경함

나. 시청각기록물 생산 의무대상 강화(안 제11조제4호 신설)

- 시청각기록물 의무대상 중 국제기구 또는 외국법원 등과 관련된 주요활동과 외국 법원 관계자의 법원 방문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 신설함

다. 전자기록물 보존 관련 조항 구체화(안 제29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인수가 종료된 전자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에만 문서보존 포맷 및 장기보존포맷으로 변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을 변경함

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요건 완화(안 제55조)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중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변경함
- 자격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법원공무원 중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 이수한 자 규정을 삭제함

4.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4조”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제기구 또는 외국 법원 등과 관련된 주요활동과 외국 법원 관계자 등의 대한민국 법원 방문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인수가 종료된 전자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문서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포맷으로 변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전자기록물의 진본성·무결성·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정보 메타데이터와 행정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정보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며, 주기적으

로 장기보존포맷을 변환하여야 한다.

제5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작성)</p> <p>① (생 략)</p> <p>1·2 (생 략)</p> <p>3.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에 해당되는 대 규모 사업·공사</p> <p>제11조 (시청각기록물의 생산)</p> <p>(생 략)</p> <p>1·2 (생 략)</p> <p>3.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에 해당되는 대 규모 사업·공사</p> <p><신 설></p> <p>4. 5. (생 략)</p>	<p>제9조(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작성)</p> <p>① (생 략)</p> <p>1·2 (현행과 같음)</p> <p>3.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4조 -----</p> <p>제11조 (시청각기록물의 생산)</p> <p>(생 략)</p> <p>1·2 (현행과 같음)</p> <p>3.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4조 -----</p> <p>4. <u>국제기구 또는 외국 법원 등과 관련된 주요활동과 외국 법원 관계자 등의 대한민국 법원 방문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u></p> <p>5. 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p>

<p>제29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 기록물 보존)</p> <p>① (생략)</p> <p>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u>전자 기록물의 진본성·무결성·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되도록 주기적으로 장기보존포맷을 변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보존포맷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전자기록물 보존을 위해 조치한 관리정보와 행정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u></p>	<p>제29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 기록물 보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인수가 종료된 전자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문서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포맷으로 변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전자기록물의 진본성·무결성·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정보 메타데이터와 행정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정보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며, 주기적으로 장기보존포맷을 변환하여야 한다.</u></p>
<p>제55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p> <p>① (생략)</p> <p>1. (생략)</p> <p>2. <u>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u></p>	<p>제55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p> <p>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u> <u>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u></p>

<p>3. <u>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법원공무원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u></p>	<p><u>한 사람</u> <u>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u> <삭 제></p>
---	--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법원기록보존소	
연락처	(031) 724 - 9202